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기존에 흙과 섞어 묻는 것만 허용하던 시립자연장지의 자연장 방법을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6개월 미만으로 사망한 영아의 경우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른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상

서울특별시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시민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